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31호

2022. 11. 30. (수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4519호	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2
제4520호	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5

자치법규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519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11월 30일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제3항제6호 중 “청와대소방대”를 “대통령경호처소방대, 시민안전체험관”으로 수정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소방과학연구센터 및 구조구급교육센터”를 “교육지원과교육훈련과소방교육훈련센터”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“인재개발과장”을 “교육훈련과장”으로 “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장”을 “소방교육훈련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3항제5호 중 “지방소방경”을 “소방경”으로, 같은 항 제6호 중 “지방소방장”을 “소방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.

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육생 모집, 학적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
3. 교육생의 보건후생과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
4. 교육장 운영, 강사 섭외 등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5. 소방방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6. 화재원인 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교육훈련 지원 및 소방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

⑤ 소방교육훈련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육훈련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
2. 화재진압·구조·구급훈련 및 소방관련 법령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공통교재 집필 및 검수에 관한 사항
4. 훈련기자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5. 분임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교육연구기관 간 교류 및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
7. 교관단 운영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2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3장 제9절의 제목 “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”를 “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”로 한다.

제63조 중 “청와대소방대장”을 “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”으로 하고 제64조제3항제3호 중 “화재진압 업무”를 “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”로 한다.

제3장 제10절(제65조부터 제66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절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

제65조(관장)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.

제66조(하부조직) ①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에 운영1과 및 운영2과를 두고, 운영1과장 및 운영2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.

② 운영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
2.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

③ 운영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5조부터 제146조까지를 제67조부터 제148조로 한다.

별표2의 도봉소방서의 방학 119안전센터 관할구역란 중 “방학1동(645~658번지 제외)”을 “방학1동”으로 하고 도봉 119안전센터 위치란 중 “도봉구 도봉로 721 (방학동)”을 “도봉구 도봉산길 40 (도봉동)”으로, 관할구역란 “도봉동(도봉1·2동), 방학1동중 645~658번지”를 “도봉동(도봉1·2동)”으로 한다.

별표3의 종로소방서 119구조대 위치란 중 “종로구 종로1길 28(수송동)”을 “종로구 율곡로 78(운니동)”으로 하고 금천소방서 119구조대의 위치란 중 “금천구 독산동 1054-8번지”를 “금천구 시흥대로 342(독산동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와대소방대 명칭을 ‘대통령경호처소방대’로 변경하고 사무범위 확대 조정, ‘시민안전체험관’을 직속기관으로 편제·신설하고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, 소방학교의 기능과 조직명칭을 변경, 119안전센터 및 119 구조대의 관할구역과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시민안전체험관’을 직속기관으로 편제하고, 이에 따라 ‘소방재난본부’의 소관 사무분장 조정 및 ‘소방학교’의 하부조직 기능조정·명칭변경

- ‘소방재난본부’ 안전지원과 내 하부조직으로 운영중이던 시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편제하여, 소방재난본부의 소관 사무분장 조정(제10조의2)
- 소방학교의 소방교육 기능 일원화를 위한 기능조정 및 조직명칭 변경(제62조)

나.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‘청와대소방대’를 ‘대통령경호처소방대’로 명칭 변경 및 소방대장 명칭변경, 사무범위를 구조·구급업무까지 확대

- ‘청와대소방대장’ → ‘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’ 명칭 변경(제63조)
- 대통령경호처소방대의 제대장 사무분장 중 ‘화재진압 업무’ → ‘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업무’로 변경(제64조)

다. 방학 119안전센터와 도봉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 조정(별표2)

- 도봉 119안전센터 이전(‘22.6.15.)에 따른 주소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라. 종로소방서 119구조대, 금천소방서 119구조대 도로명 주소 변경(별표3)
-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이전(‘21.10.~’25.12.), 금천소방서 신설(‘21.12.)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520호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11월 30일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 계	11,730	4,688	429	1,159	5,228	226
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직 계	10,717	4,634	420	395	5,044	224
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-

같은 표 6급 소계란, 행정란, 위생란, 사육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급 소계	3,564	1,885	171	106	1,298	104
행정	1,381	870	144	40	253	74

위생	15	6		1	8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사육운영	4				4	
------	---	--	--	--	---	--

같은 표 7급 소계란, 위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급 소계	3,456	1,374	122	146	1,753	61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--	----

위생	10	1		2	7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같은 표 8급 소계란, 위생란, 조리란, 농업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급 소계	1,207	167	49	70	918	3
-------	-------	-----	----	----	-----	---

위생	8	2	1		5	
조리	3	3				

농업또는녹지	7				7	
--------	---	--	--	--	---	--

같은 표 9급 소계란, 농업또는녹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9급 소계	573	8	3	3	559	
-------	-----	---	---	---	-----	--

농업또는녹지	12				12	
--------	----	--	--	--	----	--

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문경력관 소계	137	27	4	3	103	
----------	-----	----	---	---	-----	--

같은 표 나군 소계란과 나군 소계란 아래의 동물사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군 소계	63	23	4	3	33	
-------	----	----	---	---	----	--

동물사육	14				14	
------	----	--	--	--	----	--

같은 표 다군 소계란과 다군 소계란 아래의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군 소계	70				70	
-------	----	--	--	--	----	--

동물사육	35				35	
------	----	--	--	--	----	--

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공무원 계	7,434	141		7,293		
---------	-------	-----	--	-------	--	--

같은 표 소방정란, 소방령란, 소방경란, 소방위란, 소방장란, 소방교란,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정	31	2		29		
-----	----	---	--	----	--	--

소방령	163	23		140		
소방경	434	22		412		
소방위	482	38		444		
소방장	833	36		797		
소방교	1,797	3		1,794		
소방사	3,688	13		3,675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‘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’의 직속기관화에 따른 정원 조정,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,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, 행정수요 증가 분야 대응 등을 위해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,139명에서 19,167명으로 28명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‘시민안전체험관’의 직속기관화로 ‘체험관장’ 직위 신설을 위한직급조정(1명) 및 본청(소방재난본부)의 정원을 직속기관(시민안전 체험관)으로 이관(10명)

－ (직급조정) 소방사 △1 → 소방정 +1

－ (정원이관) 소방령 1, 경 1, 위 2, 장 3, 교 2, 사 1 (※소방사→소방정 직급조정)

나.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(행정 6급 +28명)

－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28명 증원

다.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, 임기제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(9명)

－ 사육운영 6급 △1, 농업또는녹지8급 △1, 농업또는녹지9급 △7 → 전문경력관 나군(동물사육) +1, 전문경력관 다군(동물사육) +8

라.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·직급 간 정원 조정(2명)

－ 위생6급 △1, 위생7급 △1 → 조리8급 +1, 위생8급 +1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